다. 입소자격 (교육대상)

1)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2) 농업계 실과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

5. 檢討意見

忠淸北道 農業系高等學校 農業機械 공동실습소 設置 條例 제정안을 검토한 바, 농업기계조작 기능 신장 敎育을 실시하므로써 農業機械에 대한 專門性과 效率性을 높이며 先進 영농 기술의 補給과 營農現場에서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敎育機關의 設置) 제2항 「敎育監이 제1항의 敎育機關을 당해 시.도 條例로 設置하고자 할때에는 교육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관련 법규 및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별첨)

7. 조례안 : 별첨

.....

다음은 忠淸北道 도서관 설치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忠淸北道 圖書館 設置 및 使用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提案事由

忠淸北道 학생회관 설치에 따라 忠淸北道 학생도서관이 흡수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서직급의 명칭 변경과 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의하여 도서관 사용료 징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4. 主要骨子

가. 忠淸北道 학생도서관 設置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忠淸北道 학생도서관 관련 부분을 삭제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改正으로 사서직급의 명칭을 변경함.
(예, 지방사서관 (5급)→ 지방사서사문관)

다. '92년도 부터 圖書館 사용료가 免除 예정됨에 따라 도서관 사용료 범위를 재 조정하고자 함.

5. 檢討意見

忠淸北道 圖書館 設置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改正 조례안을 검토한바

가. 忠淸北道 학생회관의 설치에 따라 忠淸北道학생도서관이 흡수되어, 忠淸北道 학생도서관 관련 부분이 삭제되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改正에 따라 사서직급 명칭이 變更되고, 도서관 規定에 의거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범위가 명시됨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改正條例案 : 별첨

7. 關係法令 : 별첨

다음은 忠淸北道 學生會館 設置및 使用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忠淸北道 學生會館 設置및 使用에 관한 條例案

1. 제출자 : 忠淸北道 敎育監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提案事由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特別活動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忠淸北道學生會館設置및 사용에 관한 條例"를 제정하고자 함.

4. 主要骨子

가. 청소년 文藝活動의 空間과 公演場(연극, 영화, 음악등)을 提供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人格陶冶를 위한 도서실을 운영함.

나.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다.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使用料를 實費로 징수하되 會館의 設立目的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使用料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사용료 감면율은 敎育監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라. 忠淸北道 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흡수 統合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